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장섭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7108 발의연월일: 2022. 8. 31.

발 의 자:이장섭·송갑석·홍성국

김영배 · 양정숙 · 신정훈

최혜영 • 한병도 • 이학영

이병훈 • 박광온 • 유정주

임호선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유류세에 대한 과세특례를 두어 경형자동차 소유자, 택시 운송사업자, 주한외교관 등 법에서 정하는 자가 소비하는 자동차 연료 에 대하여 개별소비세 및 교통·에너지·환경세액 등의 일정금액을 감면 또는 환급하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최근 러시아-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로 국제 유가공급망이 불안정해지고 유류가격이 급등하여 정부가 유류세 탄력세율을 최대한도까지 인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인하분이 최종소비자가에 그대로 반영되지 않아 국민이 체감하는 고물가 현상은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음.

이에 경기 조절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,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기 위해 2023년 12월 31일까지 구매한 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일

정 금액을 환급하여 민생경제를 안정시키려는 것임(안 제111조의7 신설).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1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111조의7(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에 관한 특례) ①
 「자동차관리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가 2023
 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구매하는
 제2항에서 규정하는 유류(이하 이 조에서 "유류"라 한다)에 대하여
 제4항에 따른 신용카드업자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(이하 이 조에서
 "관할 세무서장"이라 한다)은 유가변동에 따른 경기 조절, 가격 안
 정 등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 해당 유류에 부과
 된 개별소비세 중 제2항에 따른 세액을 환급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환급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액을 환급하며, 연간 환급 한도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 - 1. 「개별소비세법」 제1조제2항제4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휘발유 또는 경유의 경우: 리터당 200원의 개별소비세
 - 2. 「개별소비세법」 제1조제2항제4호바목에 따른 석유가스 중 부탄 의 경우: 킬로그램당 150원의 개별소비세
 - ③ 제1항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환급받으려는 자(이하 이 조에서 "환

급대상자"라 한다)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「여신전문금융업법」 제 2조제2호의2에 따른 신용카드업자(이하 이 조에서 "신용카드업자"라 한다)로부터 환급을 위한 유류구매카드(이하 이 조에서 "환급용 유류구매카드"라 한다)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급받아야 한다. 이 경우 하나의 신용카드업자로부터만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.

- ④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은 환급대상자가 그 카드로 유류를 구입하면 신용카드업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유류에 대하여 세액 환급을 신청하여 제2항에 따른 환급세액을 환급받거나 그 신용카드업자가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.
- ⑤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은 자가 환급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즉시 신용카드업자에게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반납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신용카드업자는 지체 없이 이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- ⑥ 환급대상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은 환급대상자가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로 구입한 유류를 해당 자동차 연료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친 금액을 징수한다.
- 1. 해당 자동차 연료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유류의 환급세액
- 2. 제1호에 따른 환급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산세
- ⑦ 국세청장 또는 신용카드업자는 환급대상자가 환급용 유류구매카 드로 구입한 유류를 해당 자동차 연료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

- 인에게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양도하는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환급대상자에서 제외한다.
- ⑧ 제4항에 따른 관할 세무서장은 신용카드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항에 따른 환급세액을 과다하게 환급받거나 공제받은 경우에는 과다환급세액과 과다환급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산세를 합친 금액을 징수한다.
-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6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환급세액과 환급세액의 100분의 40에상당하는 금액의 가산세를 합친 금액을 징수한다.
- 1. 환급대상자로부터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양수하여 사용한 경우
- 2. 환급대상자가 아닌 자가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 경우
- 3.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은 자가 환급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이후에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한 경우
- ① 국세청장은 환급대상자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등으로 하여금 필요한 자료를 국세청장 또는 신용카드업자에게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,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- ① 제1항을 적용받는 자에 대해서는 제111조의2부터 제111조의4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
- ②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환급 및 징수절차, 제출서

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에 관한 적용례) 제111조의
7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환급대상자가 환급용 유류구매카 드를 통하여 구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제111조의7(자동차 연료에 대한
	개별소비세 환급에 관한 특례)
	① 「자동차관리법」 제2조제1
	호에 따른 자동차를 소유하는
	자가 2023년 12월 31일까지 해
	당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기 위
	하여 구매하는 제2항에서 규정
	하는 유류(이하 이 조에서 "유
	류"라 한다)에 대하여 제4항에
	따른 신용카드업자 사업장의
	관할 세무서장(이하 이 조에서
	"관할 세무서장"이라 한다)은
	유가변동에 따른 경기 조절, 가
	격 안정 등의 필요에 의하여
	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 해당
	유류에 부과된 개별소비세 중
	제2항에 따른 세액을 환급할
	<u>수 있다.</u>
	② 제1항에 따른 환급은 다음
	각 호에 따른 세액을 환급하며,
	연간 환급 한도액 등은 대통령
	<u>령으로 정한다.</u>
	1. 「개별소비세법」 제1조제2

<u>항제4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</u> <u>휘발유 또는 경유의 경우: 리</u> <u>터당 200원의 개별소비세</u>

- 2. 「개별소비세법」 제1조제2 항제4호바목에 따른 석유가 스 중 부탄의 경우: 킬로그램 당 150원의 개별소비세
- ③ 제1항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환급받으려는 자(이하 이 조에서 "환급대상자"라 한다)는 국 세청장이 지정하는 「여신전문 금융업법」 제2조제2호의2에 따른 신용카드업자(이하 이 조에서 "신용카드업자"라 한다)로 부터 환급을 위한 유류구매카드(이하 이 조에서 "환급용 유류구매카드"라 한다)를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급 받아야 한다. 이 경우 하나의 신용카드업자로부터만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. 다.
- ④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은 환급대상자가 그 카드로 유류를 구입하면 신용카드업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

당 유류에 대하여 세액 환급을 신청하여 제2항에 따른 환급세 액을 환급받거나 그 신용카드 업자가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다.

- ⑤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은 자가 환급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즉시 신용카드업자에게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반납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신용카드업자는 지체 없이 이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- ⑥ 환급대상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은 환급대상자가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로 구입한 유류를 해당 자동차 연료 외의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친 금액을 징수한다.
- 1. 해당 자동차 연료 외의 용도

 로 사용하는 유류의 환급세

 액
- 2. 제1호에 따른 환급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의가산세

- ⑦ 국세청장 또는 신용카드업
 자는 환급대상자가 환급용 유
 류구매카드로 구입한 유류를
 해당 자동차 연료 외의 용도로
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환급용
 유류구매카드를 양도하는 경우
 그 사실을 안 날부터 환급대상
 자에서 제외한다.
- ⑧ 제4항에 따른 관할 세무서 장은 신용카드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 항에 따른 환급세액을 과다하 게 환급받거나 공제받은 경우 에는 과다환급세액과 과다환급 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산세를 합친 금액을 징수한다.
-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주소지 관할 세 무서장은 제6항을 준용하여 계 산한 환급세액과 환급세액의 1 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산세를 합친 금액을 징수한다.
- 1. 환급대상자로부터 환급용 유 류구매카드를 양수하여 사용

한 경우

- 2. 환급대상자가 아닌 자가 환 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 아 사용한 경우
- 3.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발급 받은 자가 환급대상자에 해 당되지 아니하게 된 이후에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사용 한 경우
- ① 국세청장은 환급대상자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등으로 하여금 필요한 자료를 국세청장 또는 신용카드업자에게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,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 등은 정당한 사 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 ① 제1항을 적용받는 자에 대 해서는 제111조의2부터 제111 조의4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
- ①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 정에 따른 환급 및 징수절차, 제출서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